



보건복지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감소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니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전파 부탁드립니다.

가. 접촉 면회 : 비접촉 대면 면회 → 접촉 면회 허용

※ 사전 예약제,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나. 외출, 외박 : 필수 외래진료 외 금지 → 조건부 전면허용

※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 · 외박 허용
※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다. 외부 프로그램 : 주야간보호만 허용 → 전체 시설 허용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 사전 자가진단키트(RAT) 실시

라. 종사자 선제검사 : 주1회 PCR 검사(변경없음)

※ 4차 또는 추가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 유증상 등 필요시 자가진단키트(RAT) 추가

마. 신규입소자 선제검사 : 입소시 1회 PCR, 음성확인시 까지 격리(변경없음)

※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

3. 위 방역수칙 변경사항은 10.4(화)부터 적용되며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붙임 :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보건복지과),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보건복지과),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보건복지과),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보건복지과),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보건복지과),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보건복지과),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보건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보건복지과), 경기도(경기도보건복지과), 강원도(강원도보건복지과), 충청북도(충청북도보건복지과), 충청남도(충청남도보건복지과), 전라북도(전라북도보건복지과), 전라남도(전라남도보건복지과), 경상북도(경상북도보건복지과), 경상남도(경상남도보건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보건복지과),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감염병관리과),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감염병관리과),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감염병관리과),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감염병관리과),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감염병관리과),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감염병관리과),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감염병관리과),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감염병관리과), 경기도(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질병정책과, 강원도(강원도감염병관리과), 충청북도(충청북도감염병관리과), 충청남도(충청남도감염병관리과), 전라북도(전라북도감염병관리과), 전라남도(전라남도감염병관리과), 경상북도(경상북도감염병관리과), 경상남도(경상남도감염병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보건건강위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보건복지상담센터, 요양보험제도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주무관

정지은

행정사무관

조성덕

요양보험운영
과장

전결 9/30

이선주

협조자

시행 요양보험운영과-4210 (2022.9.30.) 접수 기관관리부-1835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13층
전화 044-202-3517 전송 044-202-3972 / jje2015@korea.kr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2022.9.30.)
/ <http://www.mohw.go.kr>
/ 공개